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1. 신고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신고 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 권력 감시, 민생희망 캠페인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2. 피신고인

(주)씨앤앰(캐이블방송 회사)
*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68-26 제일빌딩 (주)씨앤앰 / TEL : 1644-1100
* 서울과 경기 지역에 케이블TV 방송국 17개를 소유한 수도권 최대규모의 복수종합 유선방송사업자(MSO : Multiple System Operator)로서, 케이블TV 방송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방송,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터넷 전화, 디지털 컨텐츠 및 다양한 결합 상품 등을 제공하는 기업

3. 신고 내용

피신고인은 영업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지역별 협력업체에 대하여 원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불공정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협력업체들은 매우 심각한 경영상의 곤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담당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에서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성실한 조사와 더불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증거물
별도로 첨부합니다.

2014. 7 .16

신고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실무 간사 : 심현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1. 기존 협력업체의 권리·권한 일방적 축소와 경영(영업) 범위 미보장

○ 씨앤앰과 영업·설치·유지보수·철거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은 지역별로 어느 정도 독점권을 가지고 운영되었음.
- 협력업체는 씨앤앰과 단독 계약을 맺어 해당 지역의 영업과 설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해왔음.
- 2014년부터 씨앤앰 원청은 이같은 지역 협력업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방문판매업체들과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

○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다수와 계약을 맺어서 기존 협력업체의 권리와 권한을 일방적으로 해지·조정함.
-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 업체를 운영함으로써 협력업체들의 경영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함.

<사례>
○ 중앙케이블티브이가 같은 지역에 다수 업체와 중복계약을 맺은 사례
- 중앙케이블티브와 서서울정보통신과의 위수탁 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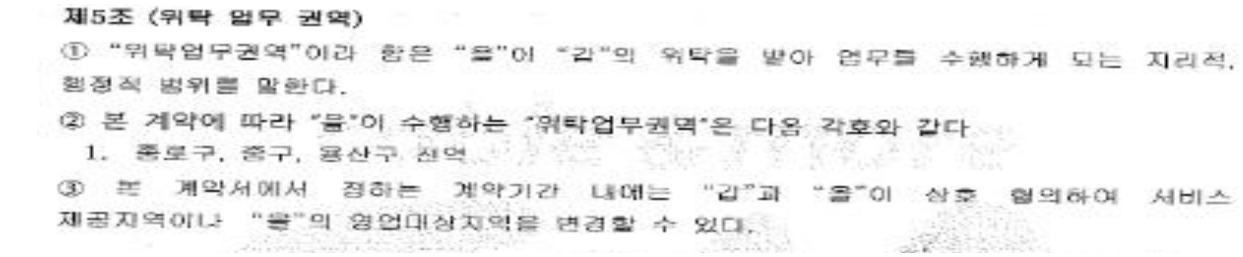

제5조 (위탁 업무 권역)
① "위탁업무권역"이라 함은 "을"이 "갑"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지리적, 행정적 범위를 말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위탁업무권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로구, 중구, 용산구 전역
③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기간 내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지역이나 "을"의 영업대상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 중앙케이블티브와 (주)아이에스에이와의 위수탁 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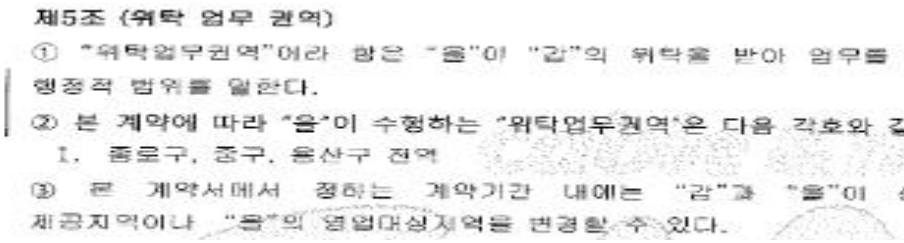

제5조 (위탁 업무 권역)
① "위탁업무권역"이라 함은 "을"이 "갑"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지리적, 행정적 범위를 말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위탁업무권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로구, 중구, 용산구 전역
③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기간 내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지역이나 "을"의 영업대상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 중앙케이블티브이와 피닉스정보통신의 업무 위탁 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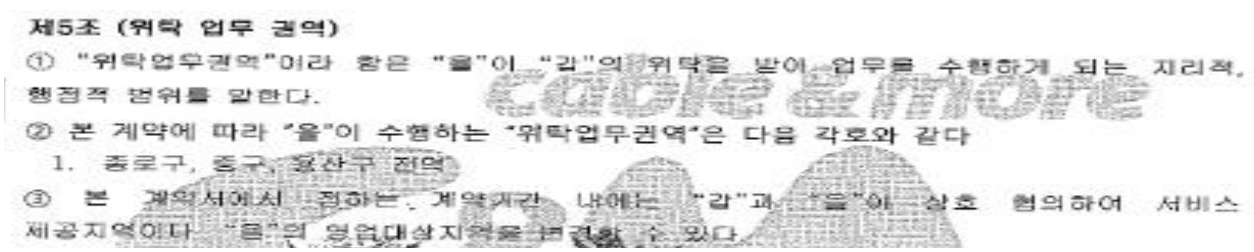

제5조 (위탁 업무 권역)
① "위탁업무권역"이라 함은 "을"이 "갑"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지리적, 행정적 범위를 말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위탁업무권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로구, 중구, 용산구 전역
③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기간 내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지역이나 "을"의 영업대상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2. 기존 협력업체와의 업무 위수탁 상태에서 방판업체도 물량을 이관하여 협력업체 경영 위협

○ 씨앤앰과 기존 협력업체는 영업과 설치, 유지보수, 해지(철거) 업무를 수탁받아서 이를 수행하고 있음.
- 원청 콜센터 또는 영업조직(RM)에서 가입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가 있는 지역 협력업체에게 설치 업무를 할당하였음.
-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이를 원청에 등록한 후 협력업체서 설치를 진행함. 협력업체는 영업 설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방판영업팀을 운영하였음.
- 그런데 2014년 1월부터 씨앤앰 지사에서 지역 협력업체에 배정해야 할 설치 물량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외주영업조직(방판)에게 이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영업 설치 외 유지보수업무까지 씨앤앰 지사에서 외주영업조직(방판)에 배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 협력업체들은 설치 물량이 줄어들어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
- 협력업체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애초부터 물량을 다른 업체에 배정했다는 것은 심각한 위수탁 계약 위반으로 보아야 함.

<사례>
(1) 씨앤앰 원청의 경기동부와 경동지점, 온라인영업팀에서 외주영업조직에 바로 물량을 배정한 사례

[redacted]네트워크 1월~2월 13일 처리건

접수자소속	(주)모아넷			(주)휴먼인프라_유료채널팀				경기동부(본점)			경동지점				총합계
구분	ATV	DTV	VoIP	ATV	DTV	ISP	VoIP	ATV	DTV	ISP	ATV	DTV	ISP	VoIP	
댁내이전	-	-	-	-	1	-	-	-	-	-	-	-	-	-	1
2월	-	-	-	-	1	-	-	-	-	-	-	-	-	-	1
상품변경	-	-	-	-	2	-	-	-	2	-	-	30	1	-	35
2월	-	-	-	-	2	-	-	-	2	-	-	30	1	-	35
설치	3	2	1	1	2	1	1	2	14	1	8	37	3	1	77
1월	1	-	-	-	-	-	-	2	1	-	1	4	-	-	9
2월	2	2	1	1	2	1	1	-	13	1	7	33	3	1	68
총합계	3	2	1	1	5	1	1	2	16	1	8	67	4	1	113

(2) 씨앤앰 원청이 운영하는 콜센터(텔레웍스, 효성ITX)에서 외주영업조직에 직접 물량을 배정한 사례

[redacted]정보통신 1월~2월 13일 처리건

접수자소속	[redacted]	(주)휴먼인프라_[redacted]팀			[redacted]	경동지점	씨앤앰텔레웍스(주)				효성ITX(주)				총합계
구분	DTV	DTV	ISP	VoIP	ATV	ATV	ATV	DTV	ISP	VoIP	ATV	DTV	ISP	VoIP	-
상품변경	2	-	-	-	1	2	-	1	-	-	1	-	-	-	7
1월	-	-	-	-	1	2	-	1	-	-	1	-	-	-	5
2월	2	-	-	-	-	-	-	-	-	-	-	-	-	-	2
설치	9	-	-	-	-	-	1	6	3	4	-	5	3	10	41
1월	9	-	-	-	-	-	-	3	1	1	-	2	1	2	19
2월	-	-	-	-	-	-	1	3	2	3	-	3	2	8	22
이전설치	1	3	2	2	-	-	-	9	4	1	1	35	5	5	68
1월	1	1	1	-	-	-	-	2	3	-	-	14	3	4	29
2월	-	2	1	2	-	-	-	7	1	1	1	21	2	1	39
총합계	12	3	2	2	1	2	1	16	7	5	2	40	8	15	116

지사	지사	구분	회사명	대 표	회사 대표번호	관리총괄	기술총괄	계약기간	계약형태	인력 현황	작업 아이디수	계약년월	비 고
	강동		한성정보통신	오효식	070-8146-7500	오효식	오효식	1년/자동연장	지사 직접 계약		1	2013-12	영업 설치(1을a/s)
	강동		케이지 (KT) 통신	김상환	070-8150-9011	김상환	김상환	1년/자동연장	지사 직접 계약	4	1	2014-01	영업 설치(1을a/s)
	송파		한성정보통신	오효식	070-8146-7500	오효식	오효식	1년/자동연장 or 재계약	지사 직접 계약	4	2	2011-05	영업 설치(1을a/s)
	송파		신일통신	문근만	070-4631-3532	최진원	최진원	1년/자동연장 or 재계약	지사 직접 계약	5	1	2013-04	영업 설치(1을a/s)
	노원		디앤엠 컴퍼니			조인용	조인용	1년/자동연장	지사 직접 계약		2	2014-02	
	노원		해라정보통신	오정환		김옥환	김옥환	1년/자동연장	지사 직접 계약		6	2013-11	
	노원	신규	세민정보통신	박경만		박경만	박경만	1년/14.04.04~15.04.03	지사 직접 계약	7	2	2014-04	
	북부		엔에스 네트워크	김선우	070-8121-1912	김선우	김선우	1년/자동연장	지사 직접 계약	5	2	2013-12	
	북부	신규	세민정보통신	김선우	070-8121-1912	박경만	박경만	1년/14.04.04~15.04.03	지사 직접 계약	5	2	2014-04	
	중랑		SM커뮤니케이션	임선욱		이효재	임선욱	1년/자동연장	지사 직접 계약		7	2014-03	
씨앤앰	용산		㈜아이에스에이	이완욱	02-323-4413	이정일	박주현	1년/자동연장	지사 직접 계약		0	2014-02	
	용산	신규	지오정보통신	오현주				1년/14.04.04~12.31	지사 직접 계약	5	2	2014-04	
	마포		서서울정보통신	전인호				14.04.28~12.31			0	2014.04	영업 설치 철거(1을a/s)
	서서울		서서울정보통신	전인호				14.04.28~12.31			0	2014.04	영업 설치 철거(1을a/s)
	중앙		피닉스정보통신	손인기		손인기	이승준	1년/자동연장 or 재계약	지사 직접 계약		2	2012-07	
	중앙		㈜아이에스에이	이완욱	02-323-4413	이정일	박주현	1년/자동연장	지사 직접 계약		1	2014-02	
	경동		씨앤아이테크	황병환		황병환	황병환	1년/자동연장	지사 직접 계약		6	2013-08	
	경동		케이원 정보통신	김준근	031-594-5521	이봉기	이봉기	1년/자동연장	지사 직접 계약		4	2013-11	
	경동		주찬네트워크	이의선	070-8160-8352	구대서	구대서	1년/자동연장	지사 직접 계약		4	2014-02	
	경동		퓨처스 정보통신	양진수		진성일	진성일	1년/자동연장	지사 직접 계약		6	2014-02	
	우리		비전	김강욱	070-8240-4149	김강욱	김강욱	자동연장 or 재계약	지사 직접 계약		0	2009-	
강남	강남방송		한성정보통신	오효식	070-8146-7500	오효식	오효식	1년/자동연장 or 재계약	지사 직접 계약			2012-10	2012-10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3. 협력업체에 지급하던 단가와 수수료를 씨앤앰에서 일방적으로 조정·변경함.

○ 아날로그 가입자 중심에서 디지털 가입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단가·수수료 항목과 금액을 일방적으로 조정·감액함.

<2009년 단가 항목과 금액을 조정·감액한 내역/일부 예시>

설치항목		적용				
		ATV	DTV	PVR	ISP	VOIP
기존	전주 TAP(컴퓨터 유)	32,000	34,000	상품없었음	34,000	
	전주 TAP(컴퓨터 무)	29,000	34,000	상품없었음	34,000	
조정	전주 TAP~ 단말기	15,000	24,000	26,000	23,000	
감액	단가 비교(평균)	14,000	10,000	-	11,000	

설치항목		적용				
		ATV	DTV	PVR	ISP	VOIP
기존	서브 TAP(아파트옥상)	24,000	32,000	상품없었음	31,000	
조정	서브 TAP(아파트옥상)	12,000	22,000	24,000	21,000	
감액	단가 비교(평균)	12,000	10,000	-	10,000	

설치항목		적용				
		ATV	DTV	PVR	ISP	VOIP
기존	단자 ~함체(아파트)	13,000	26,000	상품없었음	25,000	
조정	단자 ~함체(아파트)	7,000	22,000	24,000	21,000	
감액	단가 비교(평균)	6,000	4,000		4,000	

○ 일방적인 단가·수수료 항목 조정 후에는 단가·수수료를 전혀 인상하지 않음

- 물가 인상 등 비용 인상 요인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단가·수수료를 5년간 동결함.(ATV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
- 물가 인상율을 감안하면 유지보수 수수료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것은 결과적으로 물가인상에 따른 각종 비용 증대, 노무비 증가 등에 따른 각종 비용을 사실상 협력업체에 모두 전가시켰음을 의미함.

2008년 유지보수 수수료

구분	ATV	DTV	ISP	VOIP
일반단가	500원	800원	900원	300원

2014년 유지보수 수수료

구분	ATV	DTV	ISP	VOIP
일반단가	450원	800원	900원	300원
특별단가	200원	400원		

○ 2011년부터는 유지보수 수수료 특별단가가 생겨남

- 공청 단가, 할인 고객, 저가 상품 고객에 대해서는 특별 단가를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협력업체에 적용함.

- 원청의 영업 정책과 가입자 유치 정책에 따라 할인 고객, 저가 상품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자 이에 대한 유지보수 수수료를 50% 삭감한 것으로 보아야 함.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4.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고객관리수 수수료 지급을 차등하거나 미지급함

○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고객관리수수료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하여 협력업체에 지불할 수수료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음.
- 고객의 연체나 일시 정지, VoIP 미사용 시 등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그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행위로 보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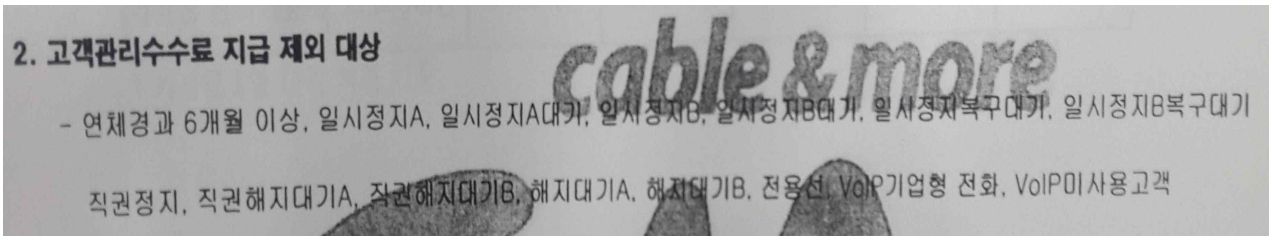

○ 원청이 협력업체의 등급을 매겨서 업체별 성과를 차등하여 지급함.
- 2012년 이전까지는 평가 점수(절대평가)가 미달할 경우 기준 수수료를 차감하고, 이를 상위 등급 업체에 지급함.

- 하위 업체에 지급해야 할 유지보수료를 일방적으로 차감한 것으로 보아야 함.

2012.2.1~2013.1.31 기간 동안 적용한 등급별 차등 수수료 현황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지급기준	기준 수수료 5% 추가	기준 수수료 3%추가	기준 수수료 0%추가	기준 수수료 -2% 삭감
정산방법	기준 수수료 * 1.05	기준수수료 * 1.03	기준 수수료 * 1.0	기준 수수료 * 0.98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5. 협력업체 노무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함.

○ 케이블 가설 공사를 협력업체가 수행하기도 함. - 씨앤앰은 2011년에 기존에 지급하던 공사 대금 중에서 직접 노무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함.

- (기존) 씨앤앰 표준품셈의 83%(직접 노무비) => (변경) 공사내역서의 45%(직접 노무비)

공사명 : xx x동 xx10단지 아파트 개보수 공사(2011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재료비	사급재료비		
		도급재료비	1,990,932	
		간접재료비	-	도급재료비*(0)%
		소계	1,990,932	
	노무비	직접노무비	6,470,653	C&M 표준품셈*(83)%
		간접노무비	517,652	직접노무비*(8)%
		소계	6,988,306	
	경비	기타공과 잡비	251,419	도급재료비+간접재료비+노무비*(2.8)%
		산재보험료	251,579	노무비*(3.6)%
		안전관리비	84,616	도급재료비+직접노무비*(1)%
		소계	587,614	
순공사원가			9,566,852	도급재료비+간접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334,840	순공사원가*(3.5)%
이윤			553,753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7)%
합 계			10,455,445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할인금액				
최종금액			10,450,000	합계 - 할인

면목4동 경남 아너스 아파트 구내망 교체공사(2014년)

구분			금액	구성비
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1,131,455	
		간접재료비		
		소계	1,131,455	
		작업부산물(△)		
		소계	1,131,455	
	노무비	직접노무비	2,566,224	(공사내역서)*45%
		간접노무비	205,298	(직접노무비)* 8%
		소계	2,771,521	
	경비	운반비		
		산재보험료	99,775	(노무비)*3.6%
		기타공과잡비	109,283	(직재+노무비)*2.8%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36,977	(재료비+직접노무비)*1%
		기타법정경비		
		소계	246,035	
공사원가 계			4,149,011	
일반관리비			145,215	(재료비+노무비+경비)*3.5%
이 윤			221,394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7%
합 계			4,510,000	천원단위 절사
사급자재비			736,000	
보관자재비			-	
총 원 가			5,246,000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6> 협력업체에 선대납 요구 및 가입자 요금 대납 지시

○ 씨앤앰은 신규 가입자 및 디지털 상품전환을 한 가입자에게 캐치온 서비스를 1달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요금을 협력업체에 선대납 강요하고 있음.
- 고객이 거부를 해도 이벤트 기간 중에는 협력업체에서 모든 신규 디지털 전환고객을 가입시켜 대납처리를 하고 있음.

○ 설치 기사가 설치 시 캐치온 서비스를 안내하게 되며 한 달 동안은 무료라고 설명
- 한 달 이후에는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되고 1주일 전 콜센타에서 안내문자가 온다고 설명
- 하지만 가입자들은 문자 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문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한 달 뒤부터는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

○ 핸드폰이 등록이 안 되고 일반 전화번호만 등록된 경우 요금민원 발생 시 협력업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상황 발생.

협력업체의 일년간 대납 사례

년/월	영업대납		캐치온		RVOD		월대납	본사입금	입금일
	건수	대납액	건수	대납액	건수	대납액			
13/07		2,702,432		3,076,121		1,228,900	7,007,458	07.09	07.01
13/08		3,326,516		2,318,035			5,644,551	08.08	08.05
13/09	809	3,280398	454	639,792			3,920,190	09.06	09.04
13/10	808	3,392,956					3,392,956	10.10	10.04
13/11	669	3,547,708					3,547,708	11.07	11.04
13/12	838	4,000,158					4,000,158	12.06	12.04
14/01	831	3,941,222					3,941,222	01.08	01.04
14/02	563	3,430,848					3,430,848	02.06	02.04
14/03	575	3,934,372					3,934,372	03.07	03.04
14/04	557	4,046,801					4,046,801	04.08	04.04
14/05	654	5,219,356					5,219,356	05.08	05.04
14/06	668	5,216,446					5,261,446	06.10	06.05

○ 공청의 경우 협력업체가 영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영업비로 공청 요금을 내도록 원청에서 지시함.
- 협력업체는 영업 실적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공청 요금으로 대납함으로써 사실상 영업비가 삭감되는 결과가 나타남.
- 결국 협력업체는 영업 목표 달성을 위해 공청 영업을 하고, 공청 영업 이후 요금을 대납함으로써 경영

에 상당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 직면함.

공청 대납 사례

작업일자	고객명	상품군	상품명	대납비	비고	종료시점
13-08-31	성산대**	ATV	ATV공청	110,000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13-09-27	그*텔	DTV	DTV비즈	122,100	1년대납	14년10월
13-09-28	박*열	DTV	DTV비즈	112,200	1년대납	14년10월
13-11-29	상암두산*	ATV	ATV공청	110,000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14-01-27	마포삼성*	ATV	ATV공청	319,000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14-03-22	정*준	DTV	DTV패밀리	146,300	6월부터 10개월 대납	
작업일자	고객명	상품군	상품명	대납비	비고	종료시점
14-03-25	이*길	DTV	DTV패밀리	237,600	1년대납	15년4월
14-03-31	도화우성*	ATV	ATV공청	440,000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14-03-23	한화오벨*	ATV	ATV공청	110,000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요금 인상 부분은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강요

-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가입자 이용요금이 오르는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 이 때, 원청에서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디지털 영업비를 가입자 요금인상 보상분으로 사용하도록 압박. (가입자에게는 요금 인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협력업체가 요금 인상분을 부담하도록 함.)

- 디지털 전환 가입자에게 무약정으로 현재 요금만 내고서도 계속 TV를 볼 수 있다고 전환을 유도하지만 실제로 씨앤앰은 1년 약정 등록을 하도록 함. 이때, 가입 고객에게는 1년 약정을 알리지 않고 씨앤앰 원청에서는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요금 인상분을 협력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함. (협력업체에서 선대납하는 방식)

- 아파트와 계약할 때 '무상으로 공청을 유지보수한다'라고 계약 후 전산 상에 전 세대를 가입자로 등록시키고 매달 가입자 요금을 원청에서 받은 영업비로 메워넣기도 함.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7. 협력업체에 외상매출금을 발생시키고 이를 다시 회수함.

○ 씨앤앰에서는 신규가입자 및 ATV->DTV전환 작업자에게 RVOD 시연을 요구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함.

- 협력업체 설치 기사가 가입자에게 RVOD를 시연하면 한 달 간 볼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함. 이때, 협력업체는 이 금액을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함.
- 씨앤앰은 한 달 단위로 RVOD 시연에 따른 쿠폰비를 협력업체에 정산하는데, 이를 다시 씨앤앰으로 재입금하도록 함.

■ 홈초이스 "1억원" 정산 금액 ※

(단위/ 원)

구 분	홈초이스 1억원 수수료 정산 현황					①협력업체 홈초이스 청구금액	②지사 => 협력업체 수수료 지급 금액	③협력업체 => 지사 입금 합 금액	FOD 쿠폰금액
	HD	SD	쿠폰(11K)	FOD 쿠폰 대체	계				
강남	202	17	357	586	1,162	9,296,000	714,000	7,185,360	
새한통신(주)	48	3	195		246	1,968,000	390,000	1,365,000	
태성정보위성통신(주)	154	14	162	586	916	7,328,000	324,000	5,820,360	4,686,360
강동	227	13	206	575	1,021	8,168,000	412,000	6,037,430	
시그마네트워크(주)	99	3	202	712	1,016	8,128,000	404,000	7,102,650	5,688,650
준네트워크(주)	80	9	205		294	2,352,000	410,000	1,435,000	
경기동부(본점)	187	13	207	322	729	5,832,000	414,000	4,017,700	
(주)타르스텔레콤	187	13	207	322	729	5,832,000	414,000	4,017,700	2,568,700
경동	106	7	270	909	1,292	10,336,000	540,000	9,159,240	
(주)기가네트워크	28	3	205	909	1,145	9,160,000	410,000	8,704,240	7,269,240
노원	113	1	149	347	610	4,880,000	298,000	3,811,800	
원케이블서비스(주)	113	1	149	347	610	4,880,000	298,000	3,811,800	2,768,800
동서울	81	15	257	422	775	6,200,000	514,000	5,171,310	
(주)이클러스네트웍	61	11	176	422	670	5,360,000	352,000	4,604,310	3,372,310
마포	200	29	162	303	694	5,552,000	324,000	3,554,240	
티앤씨넷	200	29	162	303	694	5,552,000	324,000	3,554,240	2,420,240
북부	43	13	193	366		4,920,000	386,000	4,275,200	
(주)팁스네트웍스	43	13	193	366		4,920,000	386,000	4,275,200	2,924,200
서서울	47	10	55	197		2,472,000	110,000	1,958,900	
중앙케이블네트워크(주)	47	10	55	197		2,472,000	110,000	1,958,900	1,573,900
서초	11	-	59	123	193	1,544,000	118,000	1,394,130	
(주)케인기술	11		59	123	193	1,544,000	118,000	1,394,130	981,130
용산	60	15	102	208	385	3,080,000	204,000	2,372,870	
우리정보통신DCI(주)	60	15	102	208	385	3,080,000	204,000	2,372,870	1,658,870
우리	420	16	316	243	995	7,960,000	632,000	4,148,130	
굿모닝케이블서비스(주)	111	10	110		231	1,848,000	220,000	770,000	
중랑	70	19	349	404	842	6,736,000	698,000	5,672,700	
(주)엔씨디지넷	35	7	214	404	660	5,280,000	428,000	4,727,700	3,229,700
중앙	34	10	84	173	301	2,408,000	168,000	1,969,070	
제이씨비젼 네트워크(주)	34	10	84	173	301	2,408,000	168,000	1,969,070	1,381,070
합 계	2,597	253	4,172	7,133	14,155	113,240,000	8,344,000	86,189,510	
								-	
								29,204,000	56,985,510

1 페이지

○ 씨앤앰에서 가입자가 VOD 무료 시연을 이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협력업체에 지급함.

- 그런데 씨앤앰은 이 금액을 다시 협력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음.
- 결국 협력업체는 VOD 시연과 관련하여 씨앤앰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부담하고 있음.
- 또한, 협력업체 설치기사들이 VOD 시연을 대행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음.
- 즉, 원청이 자기 정책을 협력업체에게 강요하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업무를 모두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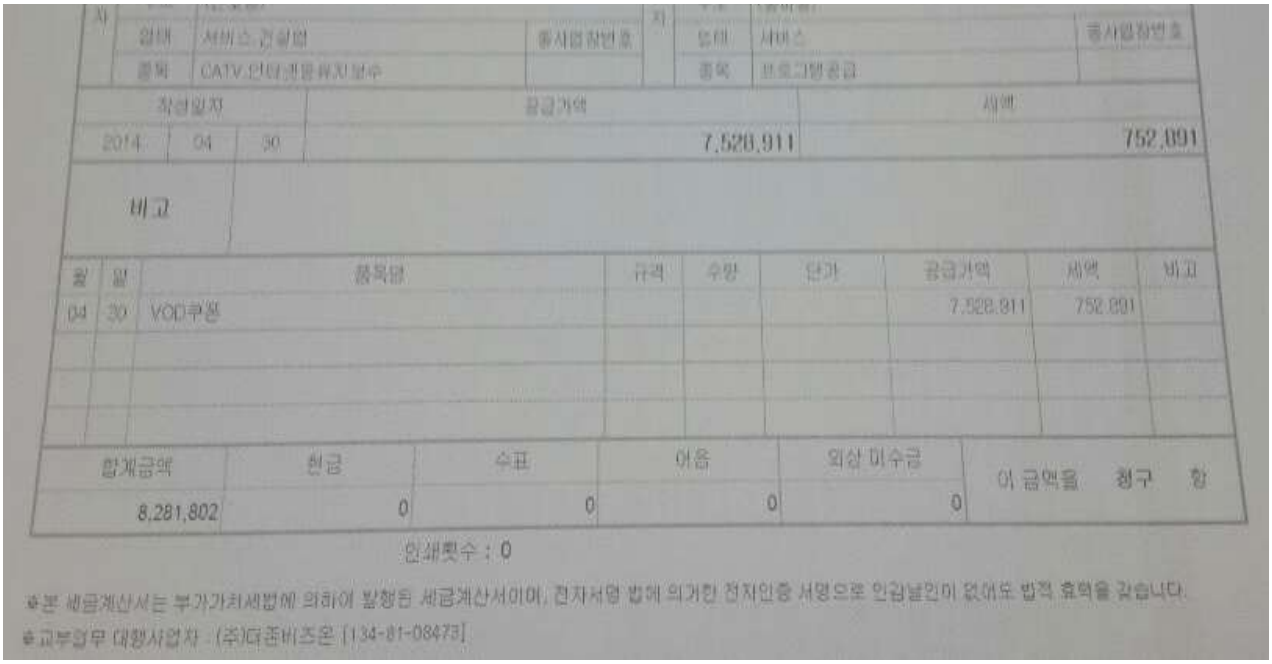

업태	서비스,건설업	종사업장번호	업태	서비스	종사업장번호
종목	CATV,인터넷방송유지보수		종목	프로그램공급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2014	04	30	7,528,911	752,891

비고

월	일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4	30	VOD쿠폰				7,528,911	752,891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8,281,802	0	0	0	0	

인쇄횟수 : 0

※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 전자서명 법에 의거한 전자인증 서명으로 인감날인이 없어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교부업무 대행사업자 : (주)다존비즈온 [134-81-08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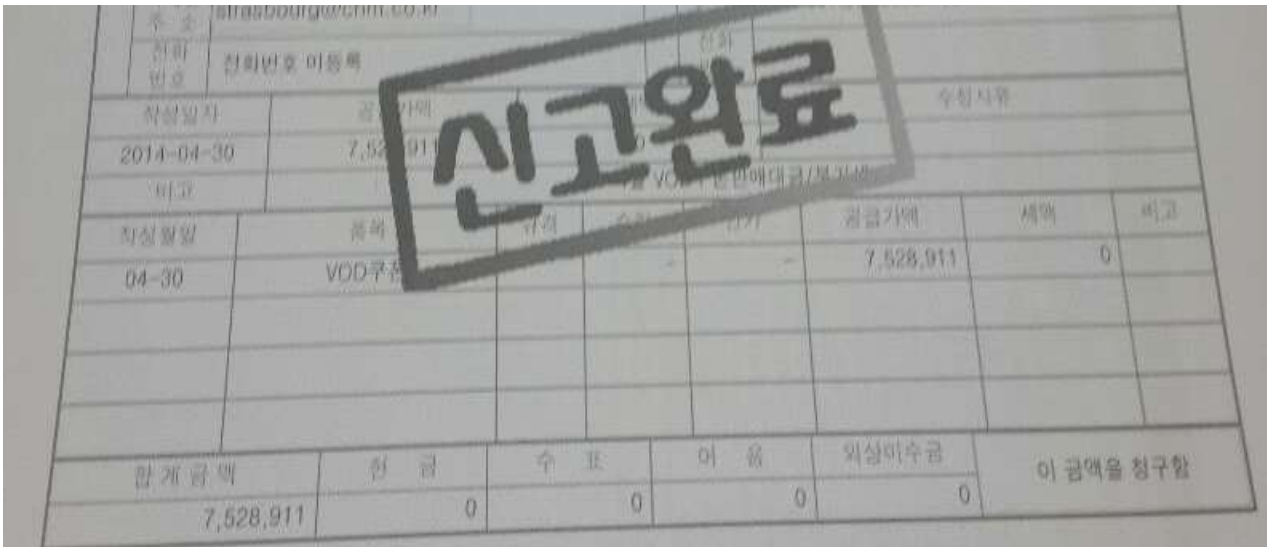

작성일자	공급가액	수정사유
2014-04-30	7,528,911	

비고

작성월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4-30	VOD쿠폰				7,528,911	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함
7,528,911	0	0	0	0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8. 협력업체 설치·철거 검수에서 이중 차감

○ 씨앤앰 원청에서 협력업체 설치 및 철거 업무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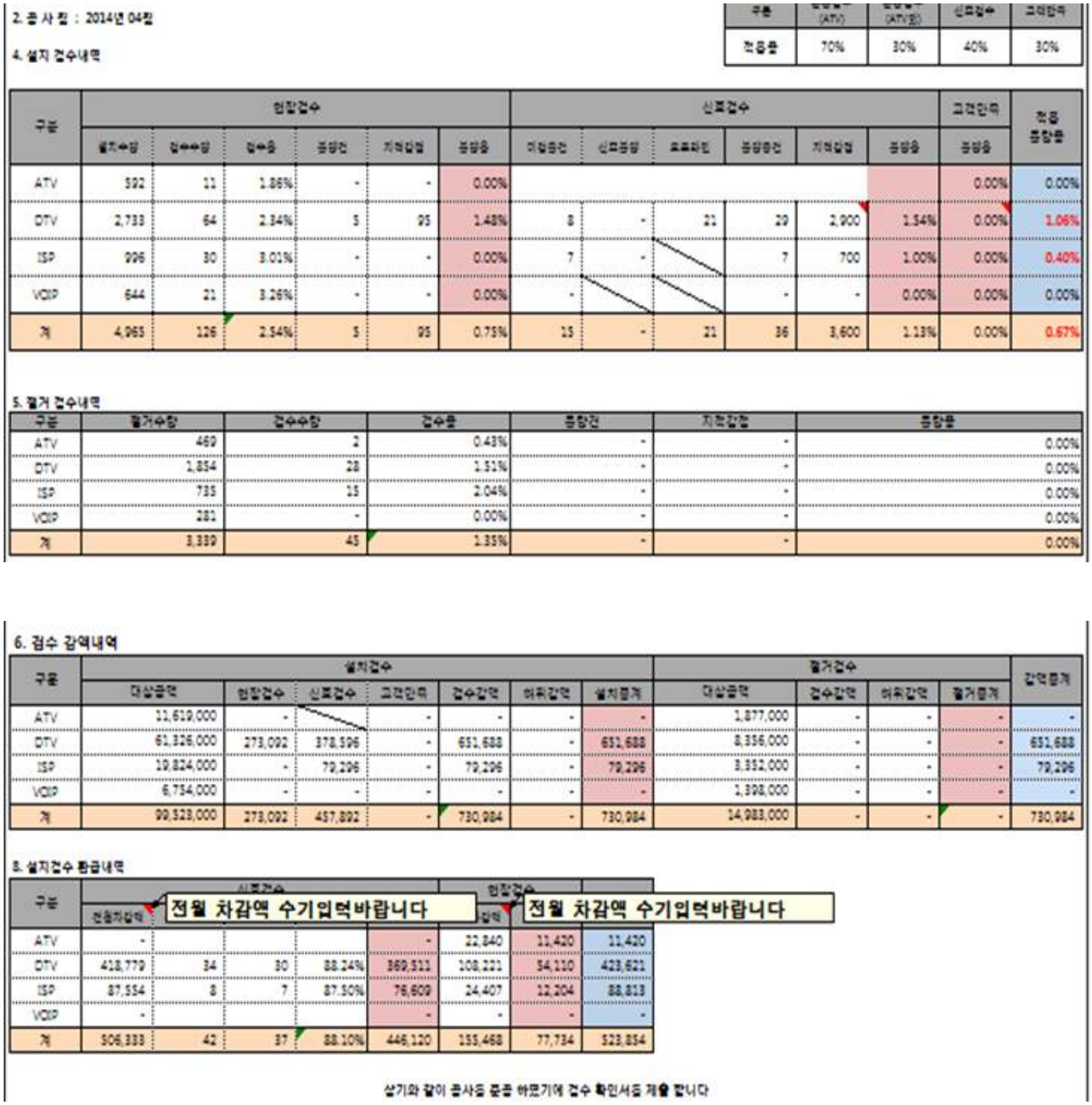

2. 공 사 월 : 2014년 04월

구분	[illegible] (ATV)	[illegible] (ATV외)	신뢰검수	고객만족
적용률	70%	30%	40%	30%

4. 설치 검수내역

구분	현장검수						신뢰검수						고객만족	적용 총합률
	설치수량	검수수량	검수율	총합건	지적갑점	총합율	미검증건	신뢰총합	요요라인	총합증건	지적갑점	총합율	총합율	
ATV	592	11	1.86%	-	-	0.00%							0.00%	0.00%
DTV	2,733	64	2.34%	5	95	1.48%	8	-	21	29	2,900	1.54%	0.00%	1.06%
ISP	996	30	3.01%	-	-	0.00%	7	-		7	700	1.00%	0.00%	0.40%
VOIP	644	21	3.26%	-	-	0.00%	-			-	-	0.00%	0.00%	0.00%
계	4,965	126	2.54%	5	95	0.75%	15	-	21	36	3,600	1.13%	0.00%	0.67%

5. 철거 검수내역

구분	철거수량	검수수량	검수율	총합건	지적갑점	총합율
ATV	469	2	0.43%	-	-	0.00%
DTV	1,854	28	1.51%	-	-	0.00%
ISP	735	15	2.04%	-	-	0.00%
VOIP	281	-	0.00%	-	-	0.00%
계	3,339	45	1.35%	-	-	0.00%

6. 검수 감액내역

구분	설치검수							철거검수				감액총계
	대상금액	현장검수	신뢰검수	고객만족	검수감액	허위감액	설치총계	대상금액	검수감액	허위감액	철거총계	
ATV	11,619,000	-		-	-	-	-	1,877,000	-	-	-	-
DTV	61,326,000	273,092	378,596	-	651,688	-	651,688	8,356,000	-	-	-	651,688
ISP	19,824,000	-	79,296	-	79,296	-	79,296	3,352,000	-	-	-	79,296
VOIP	6,754,000	-	-	-	-	-	-	1,398,000	-	-	-	-
계	99,523,000	273,092	457,892	-	730,984	-	730,984	14,983,000	-	-	-	730,984

8. 설치검수 환급내역

구분	신뢰검수					현장검수		
	전월차감액					감액		
ATV	-				-	22,840	11,420	11,420
DTV	418,779	34	30	88.24%	369,511	108,221	54,110	423,621
ISP	87,554	8	7	87.50%	76,609	24,407	12,204	88,813
VOIP	-				-	-	-	-
계	506,333	42	37	88.10%	446,120	155,468	77,734	523,854

전월 차감액 수기입력바랍니다

전월 차감액 수기입력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공사등 준공 하였기에 검수 확인서등 제출 합니다

○ 씨앤앰 원청은 검수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협력업체에 지급할 설치·철거 단가를 일방적으로 미지급함.

작업구분	상품명	설치구분	배선형태	단가	차감액	환급액
이전설치	DTV HD 프리미엄	이전	Sub TAP ~ 단말기	31,000	86,240	43,120
상품변경	DTV HD 이코노미	전환	ATV(Y,N) -> DTV	15,000	43,120	21,560
이전설치	DTV HD 프리미엄	이전	단자함 ~ 단말기	25,000	14,373	7,187
설치	DTV HD 패밀리	신규	Sub TAP ~ 단말기	31,000	43,120	21,560
상품변경	DTV HD 이코노미	전환	SD <-> HD	9,000	86,240	43,120

○ 씨앤앰 원청은 설치·철거 검수 대상에 대해 이중으로 차감하고 있음

- 위에서 본 것처럼 검수로 지적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단가를 미지급하고, 전체 검수 대상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도 추가로 단가를 미지급함.

검수항목	불량률 산출식	비고
설치 현장검수	[불량감점 / (검수수량*100)] * 현장검수 반영비율(30%) → 사업군별 합산	ATV의경우 신호검수 적용이 불가한 사유로 반영비율 70% 적용
철거 현장검수	[불량감점 / (검수수량*100)]	사업군별 동일
신호검수	[불량감점 / (검수수량*100)] * 신호검수 반영비율(40%) → 사업군별 합산	ATV제외 / VOIP의 경우 개통 확인율 적용

○ 협력업체가 검수 지적 사항을 수정·시정했어도 씨앤앰 원청은 미지급한 단가를 정상적으로 정산하지 않음.

- 철거의 경우에는 미단선 발견 시 단가 미지급과 함께 5만원의 패널티를 별도로 부과함. 미단선을 시정하여 단선 조치를 해도 미지급 단가와 패널티 금액을 환급하지 않음.

작업상세	상품군	상품명	설치 구분	배선형태	단가	검수차감 액액	환급액
해지	ISP	ISP CNM광랜	철거	장비유 (선로단선)	5,000	106,857	없음
해지	ATV	ATV 보급형	철거	장비무 (선로단선)	4,000	26,714	없음
이전철거 (지점내)	ATV	ATV 보급형	철거	장비무 (선로단선)	4,000	106,857	없음
해지	ATV	ATV 경제형	철거	장비무 (선로단선)	4,000	26,714	없음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9. 협력업체에 적정업무를 강요하며 계약해지 및 다른 업체로의 업무 이관을 협박함

○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하자 원청인 씨앤앰은 각 협력업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협박함.
- 협력업체가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원청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를 다른 업체로 이관할 수 있다는 압박을 수차례 반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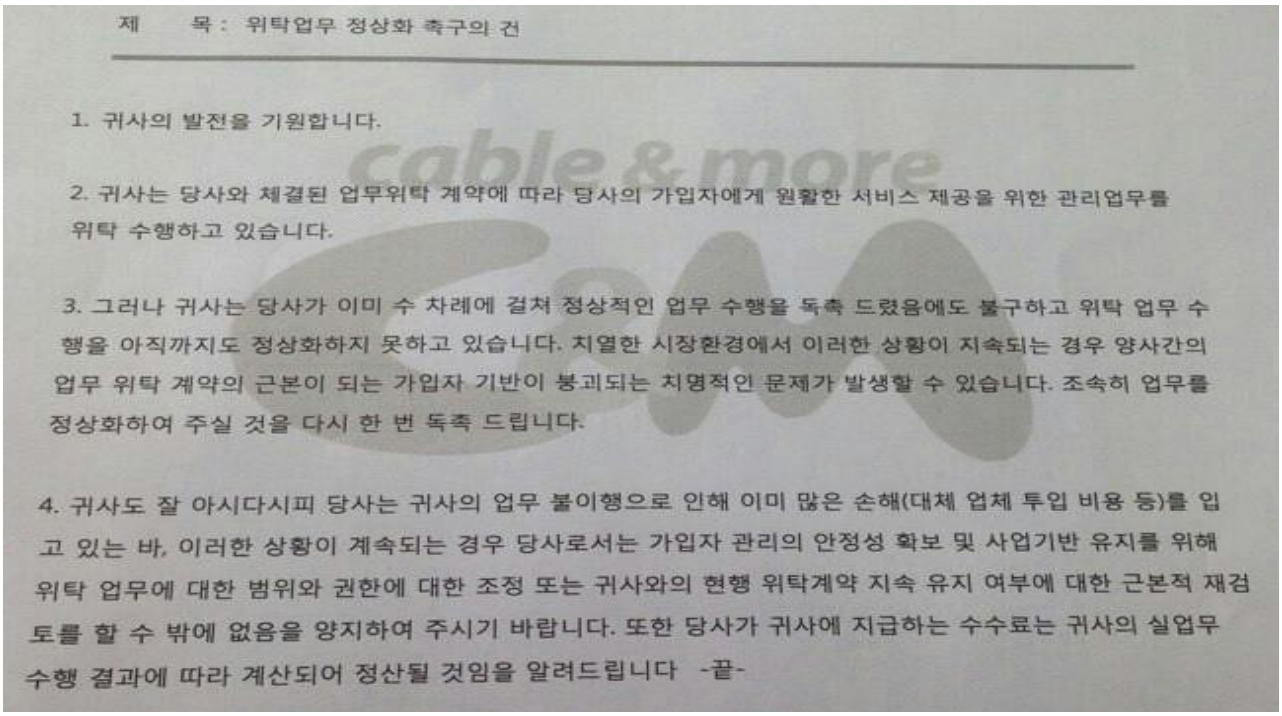

제 목 : 위탁업무 정상화 촉구의 건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당사와 체결된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당사의 가입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귀사는 당사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독촉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업무 수행을 아직까지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시장환경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양사간의 업무 위탁 계약의 근본이 되는 가입자 기반이 붕괴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업무를 정상화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독촉 드립니다.

4. 귀사도 잘 아시다시피 당사는 귀사의 업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미 많은 손해(대체 업체 투입 비용 등)를 입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당사로서는 가입자 관리의 안정성 확보 및 사업기반 유지를 위해 위탁 업무에 대한 범위와 권한에 대한 조정 또는 귀사와의 현행 위탁계약 지속 유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귀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귀사의 실업무 수행 결과에 따라 계산되어 정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협력업체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원청 차원에서 그 원인을 따지고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협력업체에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임
-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과 이유를 불문하고 협력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음.

일자 : 2014/06/11

신 : 수신처 참조

조 : 업무총괄

목 : 위탁업무 정상화 촉구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귀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위탁업무(고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 등)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미 수 차례 협의 드린 바와 같이 귀사가 수행하고 있지 않는 위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음과 같은 일정과 내용으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제3의 업체가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간 : 2014년 06월 10일부터 귀사가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② 관련근거 : 업무위탁계약

3. 당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위의 조치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행일자 : 2014.07.10

수 신 : 굿모닝케이블서비스㈜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위탁업무 정상화 촉구의 건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당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당사의 가입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6월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사분규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위탁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당사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으나, 귀사의 노사분규는 장기화되어 가고만 있으며 최근에는 직장폐쇄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고객 서비스의 수준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바, 당사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없을 경우, 당사로서는 부득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역무 및 지역 조정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귀사와의 위탁 계약에 대한 지속 유지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조기 정상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끝 -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10.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 계약 해지

○ (주)씨앤엠은 협력업체가 자신을 상대로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업체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 일산 지역 씨앤앰 협력업체인 시그마네트워크(주)(이하"시그마")가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원청 씨앤앰에서는 소송 철회를 협박함. 원청 씨앤앰의 협박에도 협력업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자 씨앤앰은 위수탁 계약 기간(2015년 8월 31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업무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함.
- 마포 지역 씨앤앰 협력업체인 티앤씨넷(주)에 대해서도 씨앤앰은 동일한 행위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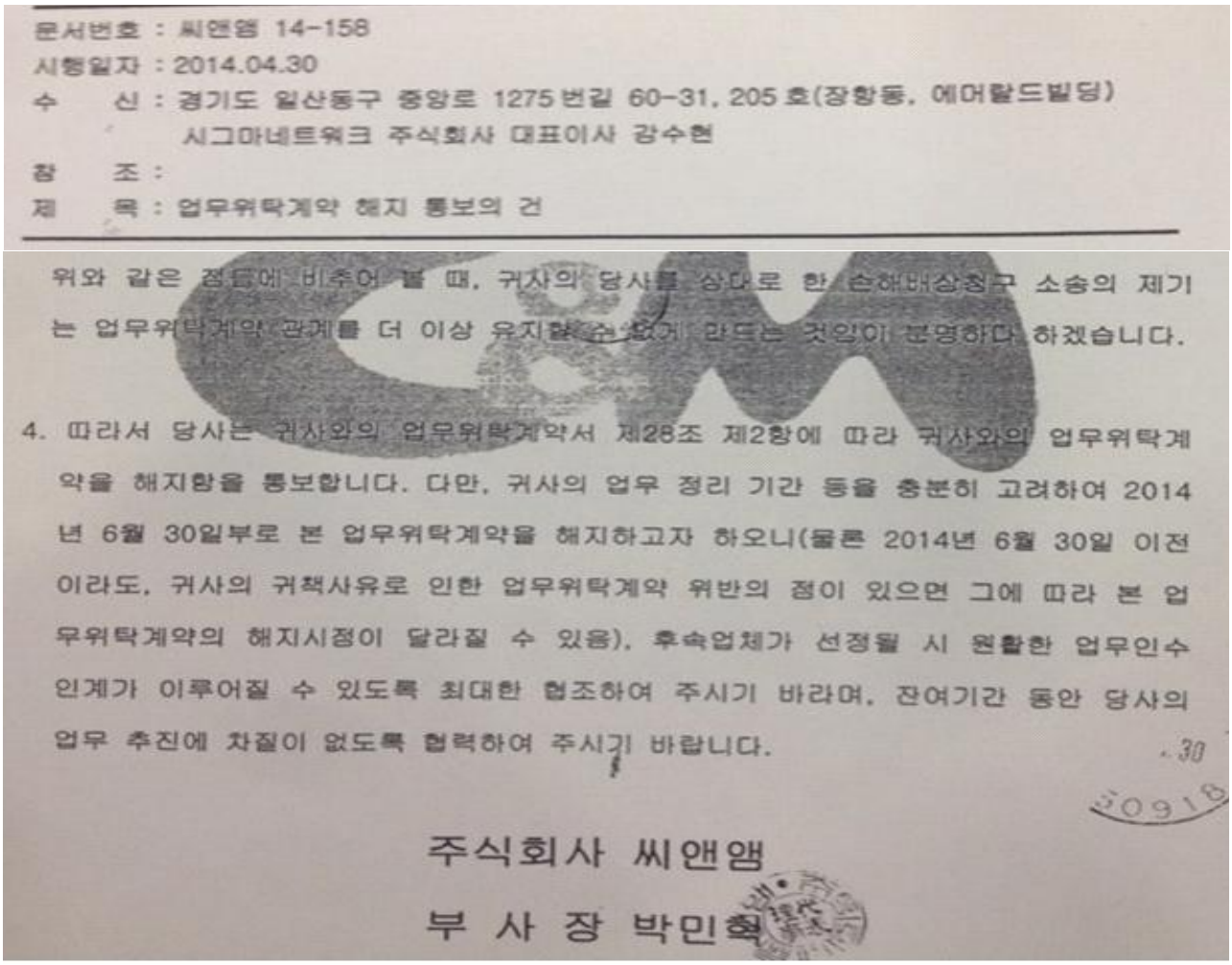

문서번호 : 씨앤앰 14-158
시행일자 : 2014.04.30
수 신 : 경기도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60-31, 205호(장항동, 에머랄드빌딩)
시그마네트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수현
참 조 :
제 목 : 업무위탁계약 해지 통보의 건

위와 같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귀사의 당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기는 업무위탁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4. 따라서 당사는 귀사와의 업무위탁계약서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귀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합니다. 다만, 귀사의 업무 정리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2014년 6월 30일부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물론 2014년 6월 30일 이전이라도, 귀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업무위탁계약 위반의 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본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후속업체가 선정될 시 원활한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잔여기간 동안 당사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주식회사 씨앤앰
부 사 장 박민혁

○ 씨앤앰은 시그마네트워크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업체의 사무실이나 집기 및 작업에 필요한 장비 차량 등 인수인계 하지 못하도록 함.

불법·불공정행위 및 증거자료 11. 특정 업체 장비 구매 및 사용을 강제함.

○ 4000개가 넘는 자재의 구입처를 원청이 결정하여 협력업체에 강요.

- 정해진 자재를 정해진 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함.

<자재 사용처 지정 현황>

	규격	구매단가	최종구매거래처명
5C SS 케이블	RG-6/U/T-SS (1.3mm 지지선)	202	(주)금강케이블
5C SS 케이블	RG-6/U/T-SS (1.3mm 지지선)	175	(주)에스파워
5C 압착 콘넥터		230	주식회사에스제이파워넷
5C 케이블	RG-6/U/T	128	(주)에스파워
5C 케이블	RG-6/U/T	128	일조텔레콤(주)
5C 케이블	RG-6/U/T	145	(주)금강케이블
5C 콘넥터	ONE TOUCH	193	주원정보통신
5C 콘넥터	크램프형	109	미래부품
5단 선반	460*910*1800	116,800	(주)신아이앤씨
5단옷장		230,000	민트인터내셔날
5단캐비닛		440,000	민트인터내셔날
7C Pin형 콘넥터	GRS-11U-CH	2,900	(주)에스파워
7C Pin형 콘넥터	QAM To 8VSB Trans Modulator	2,100	주원정보통신
7C Pin형 콘넥터	FT형	2,900	(주)하나시스템즈
7C Pin형 콘넥터	ONE TOUCH	1,300	주원정보통신
7C SS 강선 케이블	RG-11/U/T-SS (강선 2.6mm 지지선)	460	(주)금강케이블
7C SS 강선 케이블	RG-11/U/T-SS (강선 2.6mm 지지선)	395	(주)에스파워
7C SS 연선 케이블	RG-11/U/T-SS (연선 1.8mm 지지선)	404	(주)금강케이블
7C SS 연선 케이블	RG-11/U/T-SS (연선 1.8mm 지지선)	350	(주)에스파워
7C 압착콘넥터		2,300	주식회사 에스제이파워넷
7C 압착콘넥터		2,300	(주)하나시스템즈
7C 케이블	RG-11/U/T	257	(주)에스파워
7C 케이블	RG-11/U/T	295	(주)금강케이블
7C 케이블	RG-11/U/T	257	일조텔레콤(주)

위반 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의 건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시행일 2014.2.14]]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8.13] [[시행일 2014.2.14]]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3.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

4.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13.8.13>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⑤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3.8.13>

⑥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개정 2014.2.11>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활동 방해

9. 삭제 <1999.6.30>

10. 부당한 지원행위